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

제정 2012. 8.17 개정 2015.10.20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사적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클린 코바코를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에 청렴 옴부즈만 제도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청렴옴부즈만(이하 "옴부즈만"이라 한다)이란 공사의 사업 및 업무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·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방지하고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·관행·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공사로부터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구성) ①옴부즈만은 총 5인 이내로 위촉한다. <개정 2015.10.20> ②옴부즈만은 선정 당시 공사 외부인으로 위촉한다. <개정 2015.10.2 0>
 - ③옴부즈만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감사부서의 추천을 받아 사장이 위촉한다.
- 제4조(임기 및 신분보장)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 <개정 2015.10.20>

- ②옴부즈만은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.
- ③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장이 해촉할 수 있다.
- 1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제5조의 겸직금지 또는 제10조의 공표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
- 4. 사회적,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5. 현재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
- 6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공사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
- 7. 공사가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경우
- 제5조(겸직금지)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. <개정 2015.10.20>
 - 1. 국회의원, 지방의회 의원
 - 2. 정당 등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집행부 또는 상 근직원

- 3. 그밖에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6조(직무 및 권한)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공사 업무 및 사업에 대한 조사, 청렴 관련 업무 및 사업에 대한 감시, 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
 - 2. 공사 업무 및 사업에 제도 및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제시
 - 3. 옴부즈만 관련 활동에 참석 및 의견표명,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
 - 4. 청렴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한 회합에의 참여
 - 5.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민원사안, 문서 등에 대한 공표권
- 제7조(직무수행 방법) ①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,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시정 권고와 공사 수행업무에 대한 제도 및 업무 개선을 감사부서를 통해 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
 - ②옴부즈만이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- 제8조(활동결과 제출) ①옴부즈만은 활동 시 도출된 권고사항 등 활동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옴부즈만은 연간 활동결과를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공표절차 준수)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민원사 안,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·유포할 수 없으며, 공사의 감사부서와의 합의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 제10조(필요경비) 공사는 옴부즈만 회의, 현장 활동 등 관련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옴부즈만에게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